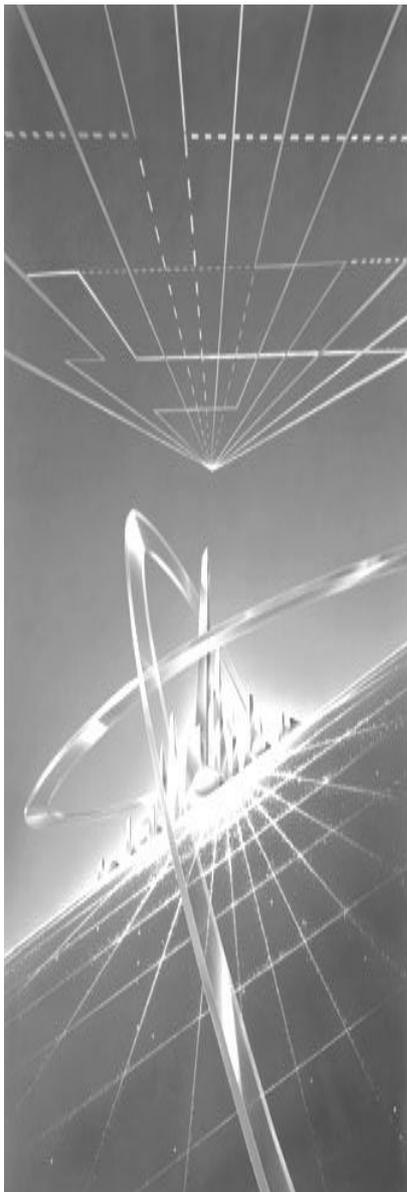


건설동향브리핑



제 100 호 (2005. 11. 1)

- 경제 : 2005년 3/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 둔화
최근 주택시장 동향
- 정책 : 「하도급법」 규제 강화 문제 있다
- 이슈 : 건설업 육성을 위한 합리적 입찰제도 혁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향
대중소 경향간 균형 발전을 통한 경쟁력 향상
국내 건설공사비지수의 현황 및 개선 방향
- 정보 : 일본 중소 건설업체 신시장 진출 사례 (II)
- 논단 : 「건설동향브리핑」 100호 발간에 즈음하여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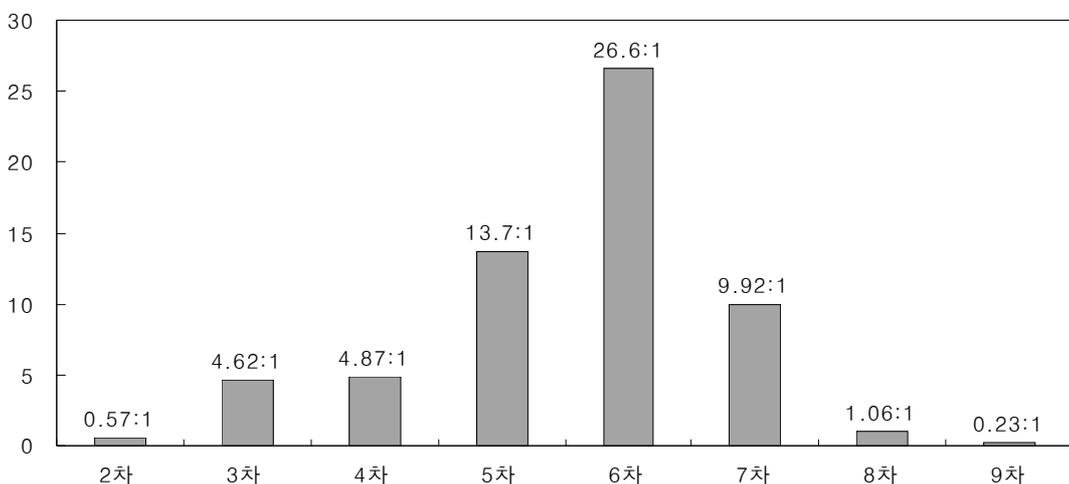
■ 부산 북항대교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

부산시 해안 순환도로망의 핵심 축인 북항대교 건설을 위한 민자 유치 협상이 4년여 만에 마무리돼 내년 하반기에 착공된다. 부산시와 북항대교(주)가 합의한 협약안에 따르면 영도구 청학동과 남구 감만동을 잇는 북항대교는 총길이 3.33km의 왕복 4~6차로 규모로 건설되며 전체 구간 중 부산 북항의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1.01km는 사장교 형태로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2003년 7월 1일 기준 불변 가격으로 3,714억원이며 62%인 2,303억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전액 출자한 북항대교(주)가 투자하고, 28%인 1,411억원은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북항대교의 공사 기간은 4년 6개월로 예정돼 있어 2010년 말 개통될 전망이다.

■ 서울시 동시분양 청약경쟁률 추이

- 서울지역 동시분양 청약 경쟁률은 지난 8·31 대책 이후인 지난 9차에는 0.23:1로 크게 낮아짐.
- 2005년 서울지역 동시분양 청약경쟁률을 보면 지난 6월에 26.6: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지기 시작함.
- 8·31 대책 직후인 8차(9월 5일) 동시분양부터 경쟁률이 크게 하락함.
- 정부는 청약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제거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질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11월 동시분양(12월초 분양)분부터 서울지역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서울지역 동시분양 청약경쟁률 추이



자료 : 국민은행.

2005년 3/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 둔화

-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에 그쳐 -

■ 비주거용 건물투자 감소 지속

- 비주거용 건물투자가 감소한 데다 도로, 전력시설 등 토목건설 투자도 증가폭이 줄어들어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에 그침.
 - 2/4분기에는 1.7%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다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1/4 ~ 3/4분기까지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에 그침.
 - 내수(재고 제외) 증가율이 3.4%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둔화되어 내수 기여도는 전분기 0.3%p에서 0.1%p로 낮아짐.
- 건설업 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율을 기록함.
 -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이 모두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에 그치면서 1/4 ~ 3/4분기까지는 0.1% 증가함.
 - 건설업의 내수 기여도는 전분기 0.1%p에서 0.0%p로 낮아짐.
- 올해 4/4분기는 지난해 4/4분기의 감소(-3.4%)에 따른 통계적 반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폭은 크지 않아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은 1% 이내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국내총생산 및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구 분	2004p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4~3/4
국내총생산(GDP)	5.3	5.5	4.7	3.3	4.6	2.7	3.3	4.4	3.5
(건설업생산)	4.9	3.7	2.2	-2.2	1.7	-3.0	1.7	0.6	0.1
민간소비	-1.3	-0.5	-0.8	0.6	-0.5	1.4	2.8	4.0	2.7
설비투자	-0.3	6.2	6.8	2.5	3.8	3.1	2.9	4.2	3.4
건설투자	4.9	3.6	1.3	-3.4	1.1	-2.9	1.7	0.4	0.0
재화수출	29.2	29.2	18.0	10.5	21.0	8.1	6.5	13.5	9.3
재화수입	12.7	22.2	12.5	8.8	13.8	3.1	3.6	10.0	5.6
내수(재고제외)	0.2	1.7	0.9	0.2	0.7	1.2	2.7	3.4	2.5

자료 : 한국은행.

백성준(부연구위원·sjjly@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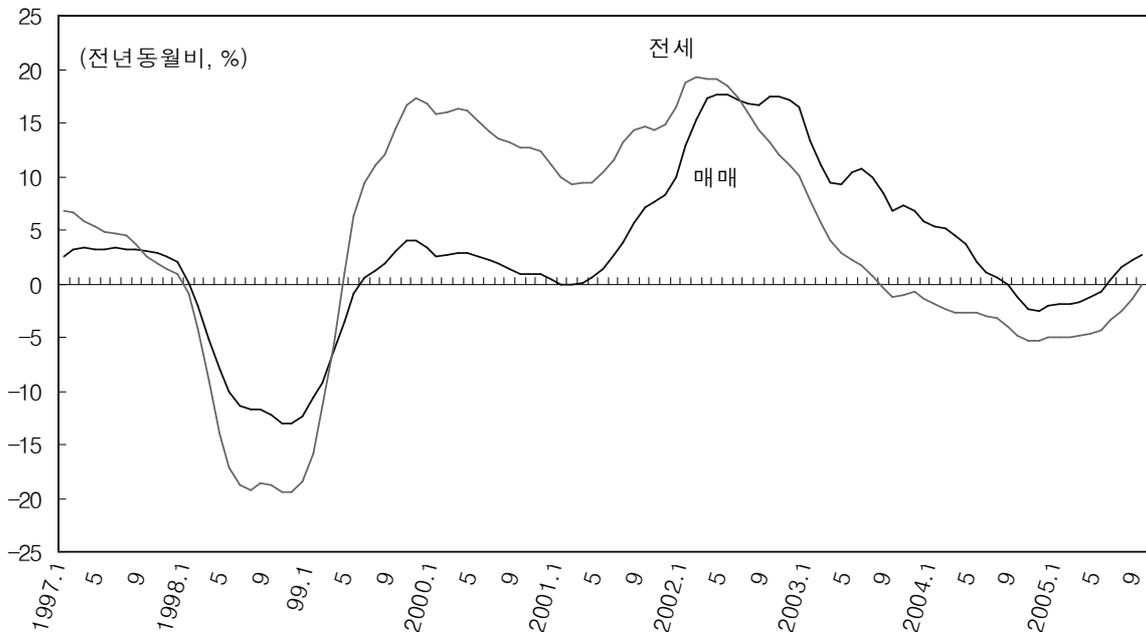
최근 주택시장 동향

- 주택매매가격 하락, 주택전세가격 상승 -

■ 8.31 대책 이후 시장 상황 크게 변화

- 정부의 8.31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 이후 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주택가격은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크게 낮은 상황이 최근 3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정부 대책 이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상황이 역전됨.
- 주택가격지수 전년 동월비 추이를 보면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2년 하반기 이후 주택전세가격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주택전세가격은 2003년 하반기 이후 전년 동월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음.
 - 주택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2004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 하반기 이후 전년 동기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반전됨.

주택가격지수 추이



자료 : 국민은행.

-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최근 2월 동안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된 반면, 전세가격은 크게 상승함.
 -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월비 추이를 보면 올 2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9월과 10월에는 각각 0.0%, -0.2%로 가격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 반면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다 9월 이후 크게 상승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강북에 비해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크며,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년 동월비 추이

구 분	아파트 매매가격							아파트 전세가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1.5	1.8	2.4	1.9	0.4	0.0	-0.2	0.5	0.5	0.4	0.6	0.5	1.2	0.9	
서울	2.0	2.2	3.2	2.6	0.3	-0.1	-0.4	0.3	0.3	0.3	0.6	0.4	1.4	1.1	
서울	강북	0.5	0.5	0.5	1.2	0.6	0.4	0.1	0.1	0.0	-0.1	0.2	0.3	1.0	0.8
	강남	2.8	3.0	4.4	3.2	0.1	-0.4	-0.6	0.4	0.5	0.5	0.8	0.4	1.6	1.3
광역시	0.6	0.5	0.6	0.5	0.4	0.2	0.0	0.2	0.2	0.2	0.2	0.2	0.3	0.3	
수도권	1.7	2.2	3.1	2.4	0.4	0.0	-0.3	0.6	0.6	0.5	0.7	0.7	1.6	1.1	

자료 : 부동산 11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주택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 상승 추세 지속될 듯

-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 강화 및 주택경기 위축으로 매매 수요가 줄고 임대수요는 증가하면서 매매가격 하락과 임대가격 인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주택 수요자들의 주거 선호 성향이 더욱 커지고,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 보유세 부담 등이 겹치면서 주택 매수자들이 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정부 정책 발표의 영향으로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을 기대, 주택 매입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큼.
- 중장기적으로는 강남권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함.
 - 실거래가 과세, 높아지는 실효세율 등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이득(capital gain)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경우, 주택 소유 의욕이 크게 저하되어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임.

강민석(책임연구원·mskang@cerik.re.kr)

「하도급법」 규제 강화 문제 있다

-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에 관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3개의 입법안이 발의되었음.
- 지난 4월에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하여 5월에는 안경률 의원이, 6월에는 조승수 전의원이 또 다른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현재 원사업자가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지급 기한을 30일로 축소하는 내용임.
- 안경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위의 내용 이외에 현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지급 기한을 현재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10일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고, 조승수 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것들 이외에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하도급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많은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음.

■ 원도급 대금 적기 지급 우선돼야

-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기한을 현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있음 (윤건영, 안경률, 조승수 의원 발의안 공통).
- 생산 구조가 원도급-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의 흐름은 발주자가 원도급자한테 원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이 원도급 대금을 다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 따라서, 하도급대금이 원활하게 하도급자에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원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가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시기를 규제하는 것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 사업자 순으로 대금 흐름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의 타당성이 없고, 이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음.

- 하도급자의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먼저 발주자의 원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규제해야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정책임.

■ 미국의 입법 예

- 미국의 일부 주는 주정부 공사에 「조기지급법」을 제정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민간공사에도 이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Georgia주의 경우 발주자는 공사 대금의 신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The Georgia Prompt Pay Act(OCGA 13-11-1 & 13-11-4) 참조].
- 그러나, 미국 Georgia주의 「조기지급법」은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제하며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이 하도급 대금의 원천이 되는 하도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은 규제의 타당성이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재고되어야 함.

■ 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 이 외에 「하도급법」 적용 확대, 하도급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국회에 발의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강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중소기업을 원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여 「하도급법」 목적인 중소기업 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이 있음.
- 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원사업자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결국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롭지 않으므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건설업 육성을 위한 합리적 입찰제도 혁신

-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입찰제도반 보고서 요약 -

■ 혁신 방향 및 추진 과제 선정

• 입찰제도 혁신의 기본 방향

- ① 비용(cost) 개념의 전환 : 시공비 → 총생애주기비용 중시
- ② 최저가 낙찰 → 투자 가치(Value for Money) 극대화를 위한 최고 가치(Best Value) 낙찰 방식으로 전환
- ③ 민간 건설업체의 기술력 반영
- ④ 건설업체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의 변별력 제고

■ 입찰제도 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 도입

- 최저가낙찰제의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고, 발주자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 입찰제도의 선진화와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촉진
-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Part 15)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가격의 기술적으로 수용 가능한 절차(lowest-priced technically acceptable process, LPTA)” 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고 가치’ 낙찰 방식으로 도입 검토 필요
- 대상 공사 : “공사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가격 외에 기술이나 품질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공사”
- 입·낙찰 절차
 - 최저가낙찰제 공사와 마찬가지로 PQ 통과업체 중 제1단계에서 기술제안서를 심사하고, 제2단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함.
 - 기술제안 범위(설계대안, 혹은 시공 방법 등)는 발주자가 입찰공고시 명시
 - 제1단계에서는 기술제안서에 대해 통과 여부(Pass/Fail)만 결정하되, 통과업체 수는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제한
 -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비 지급 허용
 - 제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최저가낙찰제도 공사의 저가심의제도 개선
 - 입찰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없이 형식적으로 통계적 방식에 기초한 현행 저가심의제를 대신하여 발주기관의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실질적인 저가심의제 도입
 - 저가심의 주체
 - 각 발주기관별로 10인 내외의 입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타 부처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도 포함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 계약담당 공무원이 담당
 -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무원과 수요기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입찰심사위원회 구성
 -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설계금액의 직접 공사비(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 공사보험료 합계액) 대비 입찰자의 직접 공사비가 일정비율(예 : 80%) 미만이거나, 그 외 공사비(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가 일정 비율(예 : 60%)미만인 자는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실공사비 수준 미달이 된다고 보아 낙찰 배제
 - 단, 직접 공사비의 일정 비율 미만 입찰자가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공사원가 절감 증빙자료(직접 공사비 항목에 국한)를 심사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 가능
 - 외국의 경우처럼 저가 심의 탈락자가 문서로 그 사유를 해명해줄 것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사유 설명(Debriefing제도 도입)
-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 개선
 - 건설업계 내부의 물량 배분을 제도 개선 차원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공사의 투자 효율성(Value for Money)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발주 방식을 선택하고, 채택된 발주 방식이 기대했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수립
 - 설계심의제도 개선
 - 설계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충분한 평가 기간 확보
 - 설계평가위원 실명의 평가사유서 작성과 Debriefing제도 도입
 - 설계평가위원의 전문 분야별 평가
 - 설계비 보상만을 노린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2단계 설계 평가를 통해 보상할 가치가 있는 설계안을 제시한 입찰자에게만 각각 예산금액의 1%씩 보상 방안 검토

- 시공 실적이 부족하여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기 어려운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가 및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선 PQ심사, 후 설계 및 가격평가’ 방식으로 전환
- 입찰 방법 심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배분
 - 국가기관 :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방자치단체 : 행정자치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결정
 - 정부투자기관 : 현행과 같이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결정
- PQ 및 적격심사제도 개선
 - 당초 가격 요소와 비가격 요소(계약이행 능력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제도 본연의 취지를 회복해야 함.
 -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도입
 - 비가격 평가에서 변별력 강화는 PQ제도의 변별력 강화 방안으로 귀결되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PQ제도를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란 공사종류별로 건설업체의 자격과 능력을 평가하여 명부에 등록하고, 일정 기간(예 1년) 이 명부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PQ 등록 대상 공사는 현행 PQ대상 공사보다 좀더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현행 PQ심사기준을 준용하여 공사별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명부에 등재
 -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종은 PQ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 육성 차원에서 분할 발주 확대 방안도 검토 필요
 - PQ 및 신인도 감점제도 개선
 - 다양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PQ 항목에 추가된 요소(산업 재해율, 환경 벌점 등)들이 실질적으로 낙찰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구조적 불합리성 개선
- 전기·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 장기적으로 분리발주의무제도를 폐지하고 발주자의 선택권 강화
 - 단기적으로는 분리 발주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현실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민간 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의무제도의 적용 배제
 - 특히 민간 공사에서는 이같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통제해야 할 타당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전면 배제
 - 분리 발주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는 공공공사에 한해서만 적용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향

-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구조조정반 보고서 요약 -

■ 건설 생산구조의 혁신 방향

- 건설 생산구조 혁신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되,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 필요
 - 원칙에 입각한 방향은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생산구조 전환과 최소한도의 규제를 준수케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현실 여건을 고려한 방향은 단기적으로 이해 관계자의 피해 최소화 및 적응력 제고와 입찰·계약제도 등 여타 관련 제도의 개선과 연계한 규제 완화 수준 결정 등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방향에 입각하여 단계별·로드맵적 접근이 필요

건설생산구조 혁신의 기본 방향

방향 틀	기본 방향	전략
원칙에 입각한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산체계 전환 ◦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규제를 지키는 공정 경쟁 질서 확립 	◦ 정책 방향의 일관성 유지
현실을 고려한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이해 관계자의 피해 최소화 와 적응력 제고 ◦ 입찰·계약제도 등 여타 제도 개선과 연계한 규제완화 수준 결정 	◦ 단계별·로드맵 접근

■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 건설시공 업역구조 및 업종 분류 개편
 - 겸업제한 개선
 - 겸업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 대안으로 겸업 전면 허용, 단계적 겸업 확대, 현행 제도 유지의 세 가지 대안이 있으나 겸업제한 철폐의 필요성과 현실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볼 때, 최선안은 겸업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으로 판단
 - 외국의 경험으로 보아 겸업이 허용되더라도 무분별한 겸업에 의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업종별 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중소 건설업체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폐지의 방향은 확정하되, 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시공업종 분류 개편
 - 시공업종 분류 개편은 업종 구분 단순화, 현행 업역체계 유지, 업종의 통합 및 분리 병행, 업종의 세분화 등 4가지 대안 검토가 가능하며 각각 장·단점이 있음.
 -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과 전문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시공업역 조정 필요성에 따라 겸업허용을 전제로 ‘통합과 분리를 병행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됨.
 - 차선의 대안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우려와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은 겸업 규제만 해제하고 업역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
 - ‘통합 및 분리 병행 방안’으로서 검토 가능한 업종 조정방안은 다음 표와 같음.

최선안 및 차선안에 대한 보완 조정 내용

	통합 및 분리 병행(최선안)	현재 업역 유지(차선안)
업종 통합	-조경 관련 공사업 3개 업종을 단일 업종으로 통합 -철강재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 삭도공사업을 단일 업종인 철강재공사업으로 통합	-조경 관련 공사업을 단일 업종으로 통합
업종 분리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미장·조적공사업과 방수공사업으로 분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비계·과일공사업과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분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철물공사업과 창호공사업으로 분리	
부분 조정	-토공사업에서 철도도상자갈공사를 분리하여 철도·궤도공사에 포함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리모델링공사가 제외됨을 명시	
업종 폐지	-토목건축공사업을 폐지하고 토목건설업과 건축건설업으로 분리하여 흡수	-좌 동

-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 허용
 -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는 설계기술 발전 저해, 건설업체의 종합건설업체로의 발전 제약, 발주자의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 야기
 - 개선 방안으로는 시장원리에서 보나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원칙적으로 바람직
 - 그러나 전면 허용은 규모가 영세한 건축설계업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일정 수 이상의 건축사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신고 절차를 거쳐 건축설계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차적으로 허용 범위를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자기 공사, CM 발주 공사, 턴키 공사, 제안형 사업과 초고층·고기술 복합 공사, 첨단시설(반도체 등) 고난이도 공사 등으로 정함.
- 무자격·부실업체의 시장 퇴출
 - 현황 및 문제점
 - 무자격업체는 대략 전체 건설업체의 20~30% 내외로 추정되며, 대부분 자본금 미달, 기술자 미달, 경력 임원 미달 등 등록기준 미충족 상태임.
 - 건설기업의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본 부실업체는 2003년도 기준으로 29.8% (3,330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부적격업체의 시장 진입 및 확대는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 시공품질 저하, 불법 하도급 만연 등으로 소비자 즉, 건설 발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건설산업의 신뢰와 이미지를 저하시킴.
 - 개선 방안
 - 부실한 업체가 애당초 신규 진입을 못하도록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금(예치금) 용자 제한 강화 조치 필요
 - 민·관 합동의 「실태조사반」을 구성, 일정 기간 집중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 무자격업체의 낙찰은 주로 소규모 공사에서 일어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낙찰제 도상의 검증 시스템 도입 필요
 - 정부의 건설산업 정보 DB망을 활용하여 무자격·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3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직접시공의무제의 확대 여부 검토
- 하도급 규제 완화
 - 각종 하도급 규제 제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설시장 개방, 대규모 공사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 증가 등 환경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중소 업자간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체계 구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겸업제한 철폐시 현행 하도급 규제는 대폭적인 완화 등 개선 불가피
 - 겸업제한 철폐와 연계하여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사업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규제 완화 필요

대·중소 경향간 균형 발전을 통한 경쟁력 향상

- 건설산업혁신위원회 동반성장반 보고서 요약 -

- 중소기업은 시장의 저변을 구축하고 있는 토대인 만큼 중소기업이 균형 발전해야 건설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 또한 중소기업은 산업구조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산업에 활력을 부여
-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 중소 규모 공사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예〉 지역제한, 도급하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
 - 대형 공사에 부분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
〈예〉 지역의무 공동도급, PQ-적격심사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부여 제도 등
 - 위의 지원제도는 건설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에게 존립 기반이 되고 제한적이거나 수주편중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할 상황임.
- 동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 기본 방향
 -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여 대형 기업과 더불어 균형 성장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
 -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극히 어려운 상황을 감안, 장기적으로 폐지 내지 대폭 개선하더라도 중단기적으로는 제도 유지 및 보완
 - 건설산업 전체의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건설사업 전체의 Life Cycle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 전문건설업, 엔지니어링업체, 감리업체, 설계업체 등 - 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 마련 ※ 위의 3가지 중 첫째와 둘째 중심으로 검토

■ 동반성장의 기반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 건설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균형성장 방안을 대·중소 기업 역할 분담 방향과 제도 개선이라는 2가지로 검토
- 대·중소 기업 역할 분담 방향
 - 대형 기업

- E&C 업체로서 역량을 보유하여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을 선도하는 역할 수행
- 대형 프로젝트 관리를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며 해외시장 진출, 선진 외국업체와 경쟁하는 면모 구축
- 중견기업
 - 대형기업과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산업 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시공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중규모 건설공사, 기술력이 요구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 등 특화된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화하고 이를 토대로 대형 기업과 공동도급 활성화
- 중소기업
 - 특정 분야에 시공 전문업체로서의 역량 강화
 - 현재와 같이 지역업체로서의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중소 규모 지역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 수행
- 전문 분야 시공 기술을 바탕으로 대형 기업과 협업관계 형성을 통해 상생관계 구축
- 중소기업의 균형적·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필요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개편 및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들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지원
 - 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 부실업체 퇴출 시스템을 통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조성
 - 겸업제한 폐지 등 생산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전문적인 시공업체로서 대형 기업과의 협업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 턴키·대안공사 대상금액 상향 및 분할 발주를 통한 참여 확대
 - 턴키·대안공사 발주 남용 방지를 위한 발주 심의 대상공사 축소, 조정 (1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 중견·중소 업체 수주 기회 부여와 기술 발전을 위해 대형 턴키·대안공사의 분할 발주 및 설계보상비 확대
 - 턴키·대안공사 규모별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 방식 차등화(중소 규모 턴키·대안 공사는 중견, 중소기업간 공동도급시 대형 기업과 공동도급시보다 가점 우대)
 -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 규제 완화
 -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도록 하도급 규제 완화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등을 통한 건설 생산체계·방법 유연화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하여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국가계약법령에 중장기적으로 도입 필요
 - ※ 공동도급은 수평적 협력이므로 일반과 전문간 겸업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
- 부적격·부실 건설업체의 진입 억제 및 퇴출 지속 추진
- 「(가칭) 차세대 건설기술연구소」 설립
 - 선진국 건설기술 수준의 70%에 불과한 우리의 기술 수준 향상
 - 기술 인력 및 투자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기술 지원을 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토대 마련
- 해외건설 활성화 추진
 - 공적 금융지원 확대
 - 해외건설 진출 인센티브 강화
 - 해외건설 인력의 DB화 및 교육 강화
-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제도 현행 유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 축소
 - 기술적으로 보편화·일반화된 공종은 PQ 대상 제외
22개 공종 → 17개 공종(△5개 공종)
 - ※ 제외 공종 : 상수도, 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하수종말처리장
 - PQ제도 도입 이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 PQ 대상금액 상향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제도 현행 유지
 -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부여 및 시공물량 확보 차원에서 제도의 현행유지 필요 단, 지속적인 개선·보완 시행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 보완
 - 각 계층별·기업 규모별로 수주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를 살려 시공경험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
 - 현재 등급 내 만점 업체의 비율이 평균 7.1% 수준에 불과한 것을 40~50% 수준이 되도록 시공경험 만점 기준을 대폭 완화

국내 건설공사비지수의 현황 및 개선 방향

■ 건설공사비지수 정의 및 국내 현황

-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 생산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임의의 시설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일정한 시점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것임.
- 이러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임의 시점의 건설 생산액을 기준시점의 생산액으로 환산함으로써, 건설시장 규모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디플레이터로서 활용하고, 특정 시점에 계약된 공사 금액이 물가변동에 의해 얼마나 증감하였는지를 추정하는 용도로도 활용됨.
- 국내에서 개발 혹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건설공사비지수는 1980년부터 1994년까지 발표되었던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비지수와, 정부의 실적공사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4년 2월부터 개발,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건설공사비지수가 있음.

■ 정부의 건설공사비지수

- 정부가 현재 발표하고 있는 건설공사비지수는 「표준요소법」에 의한 투입물가지수에 해당되며, 투입 요소의 가중치를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의 연관 품목에서 추출하고, 각 요소의 가격 변화는 생산자물가지수와 건협외의 공사부문 시중 노임단가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 이러한 건설공사비지수는 한은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등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그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표 1>의 정부 건설공사비지수 17개 기본 분류는 이러한 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을 구성하는 분류 체계의 기본부문에서 파생된 것임.
- 과거 전체 산업구조의 가중치로 표현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초로 하여 에스컬레이션을 산정하는 방법에 비해,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정부의 공사비지수는 그 산정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가 내재되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건설 공사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무직종별 단가 변동에 의한 건설공사비지수상의 영향을 반영하는 체계상의 문제를 들 수 있음.
 - 건협에서 발표하는 건설부문의 노무직종은 총 146개이지만, 실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주요 노무직종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됨. 또한 현장에서 활용률이 높은 직종일수

록 노임단가의 변동폭(2000년 대비 2005년 약 140포인트)이 활용률이 낮은 직종의 노임 단가 변동폭(2000년 대비 2005년 약 130포인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건설공사비지수에서는 이러한 노무직종별 단가의 변동을 단순 평균함으로써 활용률이 높은 직종의 단가 변동분에 의한 영향을 감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파악됨.

산업연관표의 시설물 분류체계에 의한 공사비 규모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공사비 규모	비율		
61	건축 및 건축보수	129	주택건축	312	철근철골조주택	12,246,970	22.73%		
				313	기타주택	639,176	1.19%		
				주택건축 합계		12,886,146	23.92%		
		130	비주택 건축	314	철근철골조비주택	13,314,310	24.72%		
				315	기타 비주택	7,390,368	13.72%		
				비주택건축 합계		20,704,678	38.44%		
		131	건축보수	316	건축보수	40,582	0.08%		
				건축보수 합계		40,582	0.08%		
		건축 및 건축보수 합계						33,631,406	62.43%
		62	토목건설	132	교통시설건설	317	도로시설	7,908,168	14.68%
318	철도시설					802,187	1.49%		
319	지하철시설					156,645	0.29%		
320	항만시설					778,398	1.44%		
321	공항시설					76,224	0.14%		
교통시설건설 합계						9,721,622	18.05%		
133	기타토목건설			322	하천사방	1,585,390	2.94%		
				323	상하수도시설	1,055,025	1.96%		
				324	농림수산토목	1,072,109	1.99%		
				325	도시토목	617,525	1.15%		
				326	전력시설	130,104	0.24%		
				327	통신시설	0	0.00%		
				328	기타건설	6,055,773	11.24%		
				기타토목건설 합계		10,515,926	19.52%		
토목건설 합계						20,237,548	37.57%		
총 합계						53,868,954	100.00%		

※ 2003년도 기성실적 데이터 중 당해연도 완공공사의 공사별 기성금액의 집계치를 이용함.

- 둘째, 산업연관표상에서 다루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분류가 유의미한 분류인지에 대한 실적기반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임.
- 정부의 건설공사비지수 산정을 위한 시설물 분류체계에 의한 기성실적 자료의 공사비 규모별 집계(2003년도 준공 공사에 한정)를 살펴보면 상당 부분의 실적(62.1%)이 17개 분류중 철근철골조 주택(22.7%)과 철근철골조 비주택(24.7%), 그리고 도로(14.7%) 시설물

등 3가지 시설물에 집중되어 있음. 이러한 결과는 분류 체계로서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부 건설공사비지수의 개선 방향

- 정부의 건설공사비지수가 기존의 방법에 비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전술된 바와 같이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공사비 자료의 분석에 의한 방법을 전제로 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의 시설물 분류체계로는 다양한 시설물들의 공사특성을 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예를 들어, 현행 시설물 분류 체계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종분류와 일부 조합하여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로, 산업연관표상의 피용자 보수 부분에 146개 노무직종의 단순 평균값을 적용하여 지수를 산정하는 것은 활용률이 낮은 직종에 의한 공사비 변동률의 감쇄현상을 발생시켜 건설공사비지수를 다소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노무직종별 투입 가중치를 도출하여 이를 건설공사비지수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하지만 외주 공사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무비 비중을 과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바, 대표 노무직종들의 노무비지수만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결론

- 정부의 건설공사비지수가 기존의 방법론에 비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공사비 구조의 조사에 의한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현 건설공사비지수의 산정 체계 중 몇 가지 요소를 보완하여 산정하게 되면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것임.
 - 즉, 현 17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설물 분류 체계의 개선과 대표 노무직종의 적용에 의한 노무비지수의 개선에 대한 사항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김우영(부연구위원·beladomo@cerik.re.kr)·김윤주(연구원·yjkim@cerik.re.kr)

일본 중소 건설업체 신시장 진출 사례1)(II)

■ 일반건설업자의 개호(介護) 비즈니스 진출 사례

- 이 사례는 자본금 45억엔 규모의 주택건설업체가 2002년 6월 자회사를 설립을 통하여 고령자 개호 비즈니스에 진출한 경우임.
 - 진출 소요 비용 2억엔은 전액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였으며, 자회사에 토지와 건설비를 대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사업 개시 후에는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얻는 수입으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 경영 전략은 비용 절감이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어 수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수를 늘려 이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참고 : www.asahikensetsu.co.jp).

■ 에너지 절약 시스템의 개발 사례

- 이 사례는 전기공사업체가 냉난방 효율을 제고하는 시공법과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한 경우임.
 - 사업 진출의 배경은 향후 에너지 절약 분야가 유력한 분야로 등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실내 온도 유지 문제를 해결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이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출하였음.
 - 상품 개발을 위해 전원개발(주)와 기술 지원 및 판매 지원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제휴 형태를 취하여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였음.
 -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경영혁신법」에 의한 중소기업금융은행에서 용자를 받아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였음(참고 : www.kitakami.co.jp).

■ 다이옥신 발생 억제 산업 폐기물 소각 처리 플랜트 완성

- 이 사례는 토목건설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다이옥신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구 플랜트의 개보수 및 증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다이옥신의 발생을 억제하는 산업 폐기물 소각처리 플랜트를 개발한 경우로 법규의 개정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는 유인

1) 일본 (재)건설업진흥기금(建設業振興基金) 홈페이지(www.yoi-kensetsu.com)에 많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음.

을 제공하였음.

- 차별화 전략은 기술력을 통하여 소각처리 플랜트를 다이옥신 농도 허용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개발한 점이었음.
- 진출 성과로 본업인 건설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과 공공 발주자의 신뢰를 제고한 점, 그리고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점 등을 들고 있음.

■ 부동산 「전환 비즈니스」의 진출

- 이 사례는 내장 공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여 도심의 오피스 건물을 주거 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진출한 경우임.
 - 전환이란 건물의 용도 전환을 통하여 도시(시가지)의 활성화,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도심의 오피스를 주택이나 상가로, 창고를 상가로, 학교를 고령자 개호 시설이나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이 회사가 시행한 빌딩리뉴얼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공사 회사 4사(쇼오본드 건설, 野園 산업, JESCO, 마루베니설비)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144㎡의 분양가가 9,000만엔을 초과하고 있음(참고 : www.kd-rehome.com).

■ 건축공사의 수주 제고를 위한 신상품 개발

- 이 사례는 건축 공사의 수주 제고를 위해 무공해 도료, 지반 치환 공법 등을 개발한 경우임.
 - 무공해 도료의 경우 개발된 상품의 장점을 살려 도장 공사를 계기로 건축 공사의 수주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병원, 공공 시설, 대형 음식점 등의 수주가 증가하였음(참고 : www.okishima.co.jp).

■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

- 일본 중소 건설업체의 신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정부가 실시한 주요 지원제도는 다음의 표와 같음.
 - 향후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제도를 참조하여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일본의 건설업 신분야 진출 지원 제도

구분	세부 내용	시행시기
농업분야 진출 지원제도	농지 리스 방식에 의한 농업 참가 지원	2003년
	금융 지원(제도 자금 융자 / 농업 신용보증 보험 / 농업 법인 등에 대한 출자와 용자를 위한 체제 정비)	-
	지역·기업 협동 기반 정비 추진 대책(농업 참가 촉진 기반 정비 실증 사업 등)	2005년
	농업경쟁력 강화 교부금 중 인정 농업자 등 담당자 육성 대책 농업 경영 종합 대책 중 담당자 종합 지원 사업	2005년
	농업 경쟁력 강화 교부금 중 신규 취농 촉진 대책 농업 경영 종합 대책 중 신규 취농 촉진 종합 지원 사업	2005년
환경분야 진출 지원제도	토양오염 대책법의 시행	2002년
	폐기물 처리법의 일부 개정에 의한 「광역 인정 제도」의 정비	2003년
	학교 등 에코 개수환경 교육 모델 사업	2005년
	환경 카운셀러 등록제도	1996년
지방 환경 대책 조사관 사무소 설치	2001년	
복지분야 진출 지원제도	지역 개호복지 공간 정비 교부금 창설에 의한 지역개호서비스 기반 정비	2005년
건설관련 분야 진출 지원 제도	PFI 방식에 의해 건설공사를 하청받는 건설업자의 자금조달 원활화	2004년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	중소기업 벤처종합지원센터에 의한 전문가 파견, 세미나 등의 개최	2000년
	중소기업 재생지원협의회에 의한 중소기업 재생의 지원	2002년
	중소기업 신사업 활동 촉진법(가칭)의 창설	2005년
고용보호 지원 제도	건설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2004년
	신규성장 분야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1997년
	지역 고용 개발 촉진 조성금	2001년
	지역 고용 지원사업 특별 장려금	2002년
	중소기업 기반 인재 확보 조성금	2003년
	중소기업 고용 관리 개선 조성금	2003년
	신규 노동력 수급 조정 시스템 등을 포함한 향후의 건설 노동 대책의 검토	2005년 이후
건설업 신분야 정착 촉진 지원금(가칭)	2005년	
노동자 능력개발 지원제도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 능력개발 조성금	2001년
	건설업 신규 성장 분야 진출 교육 훈련 조성금	2002년
종합적 신분야진출 지원제도	윈스톱 서비스 센터의 설치(건설업 신분야 진출 촉진 지원 사업)	2005년
	지역의 중소 중견 건설업의 신분야 진출 촉진 모델 구축 지원 사업	2005년
	「건설업 신분야 진출 세미나」의 개최	2004년

강운산(부연구위원·wskang@cerik.re.kr)

「 건설동향브리핑 」 100호 발간에 즈음하여

격주로 발간되는 건설동향브리핑이 창간 100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1년 9월에 발행된 1호를 필두로 4년여 만에 이룬 개가이다. 시작 당시의 취지는 20면 안팎의 자료로서 건설산업의 흐름을 예의 분석·요약하여 건설업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긴 호흡의 연구에만 안주하지 않고, 보다 현장에 밀착된, 또 시의적절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는 독자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한 호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건설동향브리핑은 경제, 정책, 이슈, 정보, 논단으로 정보를 구분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건설경기 동향, 예산 추이, 취업자 동향 등을 다루고 있다. ‘정책분야’에서는 입찰제도, 생산 체계 규제, 법령 등 해당 시점에서의 정책 환경 변화를 알리고자 하였다. ‘이슈진단’은 현안에 대한 연구원 및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영정보’에서는 경영 전략, 기업 구조 변화, 외국 사례 등에 관한 동향 정보를 전달하였다. ‘논단’은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해당 기간 중에 일간지 또는 전문지에 연구원 명의로 나간 기고문을 중심으로 게재하였다.

100호 발간을 기념하여 지금까지 발행된 건설동향브리핑을 분야별로 묶어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4년 여 동안 건설산업과 관련된 주요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러한 기획 출판을 할 생각이며 건설산업의 주요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모든 건설인의 필독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보화 추세가 심화될수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자체 정보 수집 기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정보의 취약성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향후에도 건설동향브리핑을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건설산업의 발전, 대중소 건설업체의 건전한 동반 성장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한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생산적인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김흥수(부원장:infra@cerik.re.kr)

■ ‘건설동향브리핑’ 100호 발간 기념 단행본 발간

- 연구원이 건설산업의 리더들에게 건설정책 및 이슈를 전달해 온 ‘건설동향브리핑’이 11월 1일자로 100호를 발간함에 따라 그동안 게재된 원고들을 취합,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본 단행본은 건설정책, 이슈진단, 경영정보, 건설논단 등 4개 분야에 그동안 게재되었던 내용을 수록, 지난 5년 동안의 정책 및 이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건설산업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11월 중 연구원 주요행사 안내

- ‘8·31 부동산제도 개혁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2005년 11월 2일(수)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택산업연구원 공동 주최
- ‘2006년 건설 및 부동산 경기전망과 정책동향’ 세미나
 - 2005년 11월 8일(화)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용역형 CM/PM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2005년 11월 9일(수) 15:00, 팔레스호텔 대강당,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 개최